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용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919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 신설, 공제율 상향, 적용기한 연장 등	2

I. 개요

1. 김용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919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용만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2. 5.

(3) 회 부 일 : 2025. 2. 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증빙되는 지출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공제를 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사용분, 문화체육사용분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적인 경기 불황 속에서 골목상권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소비 진작을 위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년 대비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1년 연장하여 2025년의 소비증가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면서, 그 공제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 신설, 공제율 상향, 적용기한 연장 등

가. 제도 개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함.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40%, 도서·신문·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상영관·체육시설이용료에 대해서는 30%¹⁾,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30%,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함.

또한,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기본 공제한도를 차등하여 적용하고,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및 도서 등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한도를 별도로 적용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 및 공제한도]

소득공제율		공제 한도		
구분	공제율	구분	7천만원이하	7천만원초과
① 신용카드	15%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②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③ 전통시장	40%	추가 공제 한도	300만원	200만원
④ 대중교통	40%			

1)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

⑤ 도서·신문·공연·미술관· 박물관·영화관람·체육시설 이용료 등	30%			
			도서 등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연혁을 살펴보면, 1999년 9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도입 당시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적용기한이 10차례 연장되어 2025년말 일몰 예정임.²⁾ 2005년에는 신용카드 사용의 보편화로 신용카드 사용 유도차원의 조세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어 공제율을 소폭 인하하였으며,³⁾ 2007년에는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의 활성화 정도를 감안하여 공제문턱을 총급여액의 20% 초과로 상향하고, 공제적용률을 20%로 증가시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를 높여 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였음.⁴⁾ 이후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직불·선불카드의 공제율 인상(2009년 개정),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2011년 개정), 대중교통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2013년 개정), 서민 중산층 세부담 경감을 위한 급여수준별 한도 조정(2016년 개정), 도서

2) 최초 도입 시 적용기한은 2002. 11. 30.이었으나 2005. 11. 30. ⇒ 2007. 11. 30. ⇒ 2009. 12. 31. ⇒ 2011. 12. 31. ⇒ 2014. 12. 31. ⇒ 2016. 12. 31. ⇒ 2018. 12. 31. ⇒ 2019. 12. 31. ⇒ 2022. 12. 31. ⇒ 2025. 12. 31.로 적용기한이 연장되어 왔음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종전 20%에서 15%로 하향조정함.

4) 이를 통해 공제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신용카드를 통한 소비를 늘려야하며, 일단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상향하여 인센티브를 확대하였음. 또한 과표양성화와 무관한 지출 또는 중복공제 성격의 지출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상에서 배제하였음.

공연 지출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2018년 개정) 등 소비심리 개선과 건전소비 문화 정착,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졌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17년 1조 8,537억원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4조 884억원에 달하였으며, 2025년에는 4조 3,859억원, 2026년에는 4조 6,29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연도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지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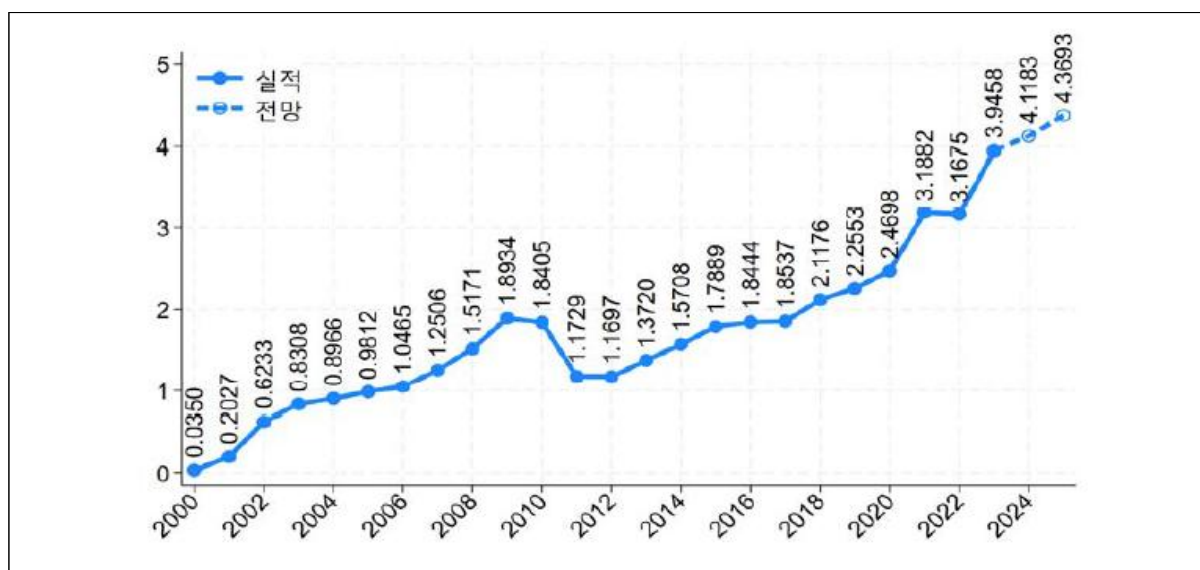
(단위: 억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망)	2026년 (전망)
조세지출액	21,176	22,553	24,698	31,882	31,675	39,458	40,884	43,859	46,297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조세지출예산서」상 조세지출 규모 추이]

(단위: 조원)



자료: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획재정부, 2025. 9.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라. 전년 동기 대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등(김용만의원안)

현행	개정안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126조의2) -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공제항목 및 공제율:	2025년 전년대비 소비 증가분 소득공제율 상향조정 - 공제대상: (현행과 같음) - 공제항목 및 공제율:																																				
<table><tr><th>구분</th><th>공제율</th></tr><tr><td>- 신용카드</td><td>15%</td></tr><tr><td>- 현금영수증·직불카드</td><td>30%</td></tr><tr><td>- 문화체육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td><td>30%</td></tr><tr><td>- 대중교통이용분</td><td>40%</td></tr><tr><td>- 전통시장사용분</td><td>40%</td></tr><tr><td>- <신설></td><td></td></tr></table>	구분	공제율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 문화체육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	30%	- 대중교통이용분	40%	- 전통시장사용분	40%	- <신설>		<table><tr><th>구분</th><th>공제율</th></tr><tr><td>- 신용카드</td><td>15%</td></tr><tr><td>- 현금영수증·직불카드</td><td>30%</td></tr><tr><td>- 문화체육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td><td>30%</td></tr><tr><td>- 대중교통이용분</td><td>40%</td></tr><tr><td>- 전통시장사용분</td><td>40%</td></tr><tr><td>- 2024년 대비 2025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김용만 의원안)</td><td>20%</td></tr></table>	구분	공제율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 문화체육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	30%	- 대중교통이용분	40%	- 전통시장사용분	40%	- 2024년 대비 2025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김용만 의원안)	20%								
구분	공제율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 문화체육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	30%																																				
- 대중교통이용분	40%																																				
- 전통시장사용분	40%																																				
- <신설>																																					
구분	공제율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 문화체육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	30%																																				
- 대중교통이용분	40%																																				
- 전통시장사용분	40%																																				
- 2024년 대비 2025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김용만 의원안)	20%																																				
공제한도:	공제한도:																																				
<table><tr><th colspan="2">총급여</th><th>7천만원 이하</th><th>7천만원 초과</th></tr><tr><th colspan="2">공제한도</th><td>300만원</td><td>250만원</td></tr><tr><td rowspan="3">추가공제 한도</td><td>전통시장</td><td rowspan="2">300만원</td><td>200만원</td></tr><tr><td>대중교통</td><td></td></tr><tr><td>문화비</td><td></td><td>-</td></tr></table>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공제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문화비		-	<table><tr><th colspan="2">총급여</th><th>7천만원 이하</th><th>7천만원 초과</th></tr><tr><th colspan="2">공제한도</th><td>300만원</td><td>250만원</td></tr><tr><td rowspan="4">추가공제 한도</td><td>전통시장</td><td rowspan="3">300만원</td><td>200만원</td></tr><tr><td>대중교통</td><td></td></tr><tr><td>문화비</td><td>해당없음</td></tr><tr><td>25년 소비증가분</td><td colspan="2">100만원</td></tr></table>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공제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문화비	해당없음	25년 소비증가분	1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공제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문화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공제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문화비		해당없음																																		
	25년 소비증가분	100만원																																			
	- 시행일: 2026.1.1.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 김용만의원안 2025. 2. 5. 발의(의안번호 7919)

□ 개정안은 2025년 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⁵⁾ 중 전년 대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보다 5% 이상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2024년에 한시 적용하기로 한 전년 대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임.

□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2021년 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21년 연말정산에서 최초 적용되었음. 그 당시는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전년 대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였으며, 전년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5%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10%를 공제해주는 것으로 설계되었음. 2022년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한 지원책으로 동 소득공제의 기한을 2022년까지 1년 연장하고, 2022년 전통시장사용금액 중 전년도 사용액 대비 5% 이상 증가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추가

5) 「조세특례제한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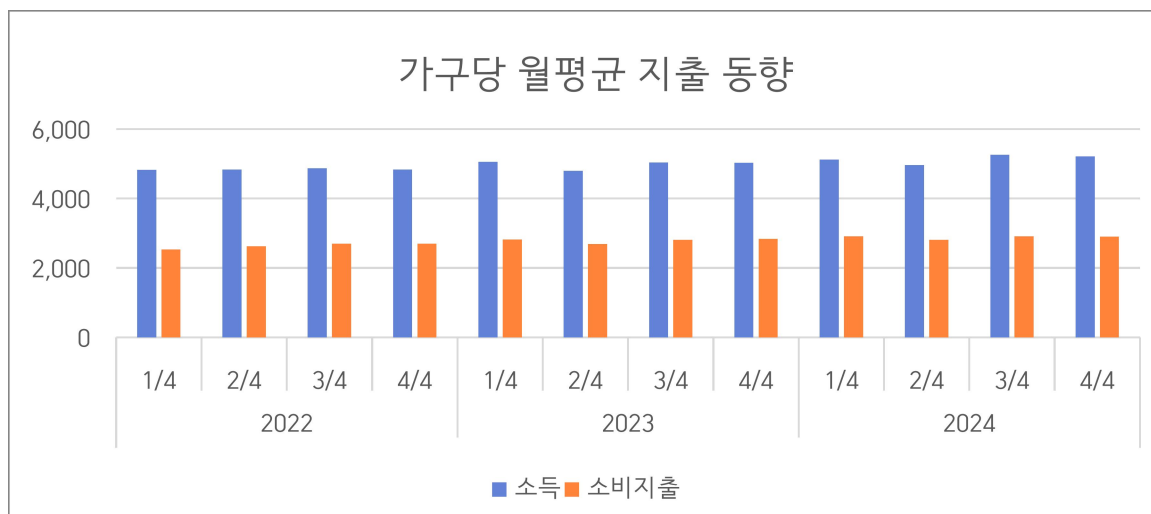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령이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령이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령이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하며, 공제율을 20%로 10%p 상향 조정하였다가, 2023년 4월 동 조항들이 삭제된 바 있음. 이후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2024년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다시 시행된 바 있음.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첫째, 가계 소비심리를 자극함으로써 내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정부가 발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⁶⁾에 따르면, 2025년은 미국 관세 충격 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됨과 동시에, 국내 경제는 먹거리 물가 등이 높게 형성됨에 따라 물가 불안정성이 우려되고, 이상기후·국제 유가의 변동성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임. 또한 2026년 이후에도 관세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 하락이 우려됨에 따라 소비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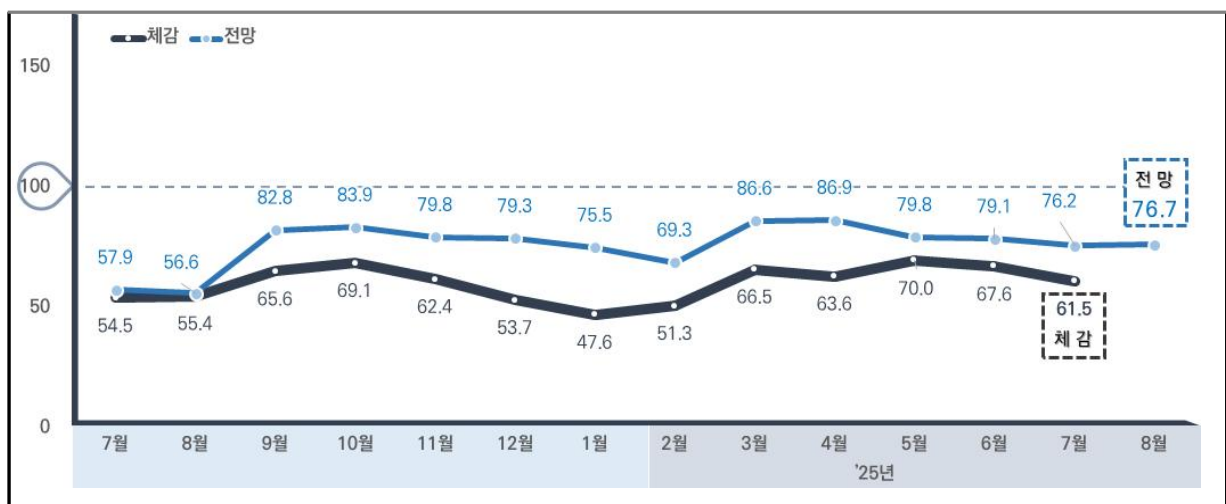
6)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2025. 9.

또한 한국은행은 경제전망보고서(2025.8)에서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24년 대비 1.1% 하향된 0.9%로 제시하고 있어, 경제의 하방압력이 지속되는 상황임.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의 전년 대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그 공제비율을 20%로 이전에 비해 상향할 경우 가계 소비심리 회복 및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둘째,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음.

최근 소상공인 체감 및 전망 BSI가 지속적으로 100 미만으로 낮게 조사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의 전년 대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할 경우, 2025년 내의 소비 전반을 진작시켜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소상공인시장 경기지수(BSI)]



* BSI 100 이상은 경기 호전, 100 미만은 경기 악화를 의미

자료: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보고서」, 중소벤처기업부, 2025. 7.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2024년 한시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측되었던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할 경우 자칫 현재의 소비를 미래의 소비로 이연하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전년 대비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의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는 한시적인 제도 시행으로 민간소비를 유도하려는 정책이나,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소득공제가 상시화될 경우, 민간은 해당 연도 소비를 억제하고, 차년도 소비를 증대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소비 성향을 조정할 수 있음. 이 경우 당해 연도 소비의 증가 폭은 크지 않아, 당초 개정안이 의도한 정책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음.⁷⁾

둘째, 전년 대비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하는 경우, 소비 여력이 고소득자·자산가일수록 상대적으로 세제 혜택을 많이 받게 될 가능성이 있음.

셋째, 개정안은 2024년 대비 2025년 사용 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제공할겠다는 내용이나, 개정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가 2025년 11월 이후이므로, 실질적으로 2025년도 중 소비 증가의 효과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7) 미국의 영구적인 Bush tax cut은 0.29의 재정승수 효과를 얻었으나, 2008년 일회성 세금 도입은 그 재정승수가 1.26으로 일시적인 세제지원이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었다는 경험적 연구가 존재함.Zandi, Mark. "A Second Quick Boost From Government Could Spark Recovery"

또한 개인소득세 인하는 2~3년 이후 부터는 GDP와 생산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모두 소멸된다는 경험적 연구 또한 존재함. "Short term tax cuts, long term stimulu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22, James Cloyne.

참고로, 202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⁸⁾에서는 2021년과 2022년에 시행된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따른 추가 소득공제 정책을 분석하였는데, ① 동 제도를 적용하였음에도 근로소득자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증가율을 전략적으로 조정하지는 않았으며, ② 동 제도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 또는 총지출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여, 추가 소득공제 정책이 소비 진작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149

8)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 신용카드 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획재정부, 2025.9.